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4389

발의연월일: 2024. 9. 27.

발 의 자:김민전・박정하・인요한

조배숙 · 김기현 · 박덕흠

이헌승 • 우재준 • 김용태

박수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교육부장관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목표·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교육감의 의견 청취나 교육청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으며 부단체장이 위원장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있음.

하지만,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행 제도 내에서 교육감이 중 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학교생활의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이와 동일하다 할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육감이 주된 역할을 수행하 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교육감의 의견을 청취하

도록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실시하여 지역별로 실효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등).

법률 제 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행정기관"을 "중앙행정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을 "시·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교육 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및 제3항,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수립하는 기본계획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
| (생 략) | (현행과 같음) |
|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 ② |
| 사항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 | |
|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 | |
| 관은 관계 <u>중앙행정기관</u> 등의 | 중앙행정기관, 특별시 |
|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 |
| | 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 |
| | 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 |
| | 라 한다) |
| | .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 <u> <신 설></u> |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내용 |
| | 과 제11조제8항에 따른 실태조 |
| | 사 결과 등 해당 지역의 여건 |
| | 을 고려하여 매년 시·도 학교 |
| |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
| |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
| |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 |
| | <u>다.</u> |
| <u><신 설></u> |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 |
| | 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
| |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

③ (생략)

④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 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및 특별 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 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 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생 략)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 • 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 사는 지역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에 관하여 시 · 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야 하며, 그 효율적인 운영을 위 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 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장관 |
|-----------------------|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u>⑤</u> (현행 제3항과 같음) |
| <u>⑥</u> |
| <u>시·도</u> 교 |
| 육청 |
| |
| |
| · |
| |
|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 |
| |
| 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 |
|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
| <u>다.</u> |
|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
|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 ② |
| |
| |
| 교육감 |
| |
| |
| |
| |

③ · ④ (현행과 같음)

의 기능 등) ① 지역위원회는

기본계획에 따라 <u>지역의 학교</u> <u>폭력 예방대책</u>을 매년 수립한 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기본계획에 따라 <u>시행계획을</u> 포함하여 지역의 학교폭력 예 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 다)을 매년 수립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전년도 예방 대책에 따른 추진실적과 다음 연도 예방대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예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u>④</u> ~ <u>⑥</u> (현행 제2항~제4항 과 같음)